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0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임호선 · 박선원 · 강경숙
복기왕 · 윤준병 · 진성준
임미애 · 이상식 · 문대림
이정문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자율방범대와 유사하게 민간인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해양 재난구조대의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도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

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생략) <u><신 설></u>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
--	---